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주최 제12회 전국 편지쓰기 대회 은상 수상작품

To. 너무 보고 싶은 할머니께

봄이 시작되려는 줄 알았는데 벌써 5월 끝자락이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편지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생신때만 편지 써 드렸는데...죄송해요!

지금은 잘 계시죠? 나중에 또 얼굴보러 갈게요.

그때까지 어디가시면 안돼요! 맞다~ 할머니 제가 전에 병문안 갈 때 드린 종이 꽃 다발요.

아직 가지고 계시죠? 버리신 거 아니죠? \*^^\*

처음에 그걸 만들어서 서울까지 가져갈 때 설레었어요. 킁킁

마음이 드실까? 아니면 너무 구린 선물인가? 차라리 진짜 꽃 살 걸 그랬나? 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정말 좋아보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더니깐요!

처음에 부모님께서 할머니께서 대장암에 걸리셨다고 말씀해주셨을때 꼭 가슴에 큰 돌덩어리가 탕! 하고 떨어져서 심장을 꼭 누르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런 느낌 처음느꼈어요. 사람들이 슬프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만 들던 암을 할머니께서 걸리셨다니..너무 슬퍼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 제 불등을 타고 내렸는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내가 할머니와 어떤 추억들이 있었더라..?

하는게 떠올랐어요.

솔직히 서울에 가면 할머니 얼굴 보고 밥먹고 놀다가 간것 같아요. 특별히 할머니랑 얘기를 나눈적도 없고...죄송해요! 할머니와 추억이 없는 것 같네요...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되죠 \*^^\* 맞다! 맞다! 할머니 요번 봄에 생신이셔서 오랜만에 식구들이랑 다같이 오셨잖아요~

그때 엄청 좋았어요! 답답한 곳에 계시다가 나무도 많고 바다도 있는 곳에 오시니까 상쾌하고 좋으셨죠? 내년 생신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꼭이요!

그리고 여름에도 오셔서 바닷가도 가구요, 음...맛있는 회도 먹고 가족 다같이 모여서 마당에 돛자리 깔고 과일도 먹어요 ^^ 약속해요!!

생각만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 할머니의 웃음소리 못들었지 꽤 된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진짜~ 웃길때 깔깔깔 웃으시잖아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요. 지금 할머니께서 병원안에 계시겠죠?

그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하실까...?

밥 세끼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저 요즘 진짜 많이 먹고 있어요. 남남 먹어도~ 먹어도~

왜 이렇게 배고플까요? ㅠ.ㅠ 살도 안찌구요...저는 너무 마르게 콤플렉스인것 같아요.

내일 제 친구 생일이어서 파티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애는 저랑 정말로 친했는데 전학갔어요. 그 애도 저처럼 몸집이 작고 말랐어요. 그래서 더 잘통했나봐요! 할머니~ 이렇게 편지로 조잘조잘 떠드니까 꼭 친구랑 떠드는 것 같아요!!! 킁킁. 아 근데요~ 아빠한테 재밌는 옛날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할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슨 얘기였나면요. 할머니께서 쌍둥이셨다고 제일 먼저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더니깐요~ 쌍둥이 할머니가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 어렸을때 돌아가셨다고 해서 안타까웠어요.. 할머니께서도 쌍둥이 할머니 지금 많이 보고 싶죠? 분명 할머니처럼 뽀글 뽀글 파마에 둥글둥글한 얼굴, 송아지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닮아서 이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한테 다른 이야기도 들었어요. 할머니께서는 16살 때 시집을 가셨다고 하셔서 저는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19세때 큰고모를 낳으시고...총 7남매를 낳으셨잖아요. 1명 낳는 것도 힘들텐데 어떻게 7명이나 낳으셨어요? 대단하셔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48세의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 아빠가 너무 안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아빠를 잃었잖아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많은 7남매를 힘들게 키우신 할머니께서 더 힘들셨을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그 어린 나이때부터 지금까지 고생만 하신것 같네요. 지금부터라도 고생 안하시면 좋으려만..제발 아프셔도 꼭~ 참고 더 오래오래 사셔야되요. 할머니!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 어렸을 적에 어땀어요? 정말 궁금해요. 지금 우리 집에도. 아빠가 7살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귀여워요~ 눈이 땡그랗고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는데 꼭 우리 오빠 어릴 적 사진 같아요. 아빠라서 그런지 닮았나봐요.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께서는 몇십년동안 그렇게 힘들셨을텐데... 일곱 남매 때문에 고생을 하신거죠?...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랑 옆에서 말동무라도 되어서 곁에 더 있었어야 했는데...

할머니께서 아프지만 앉으시면 정말 좋을텐데...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돼니까 재밌는 얘기나 할까요? 할머니! 제가요 오늘 친구집에 놀러갔다 왔는데요. 떡볶이도 먹고요. 돈까스랑 샌드위치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바다도 가서 놀았는데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할머니도 맛있는거 많이~ 사드리고 싶은데...

안마도 해드리고 뽀뽀도 해드릴게요. ㅋㅋ 뽀뽀는 아직 한 적이 없어서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이라도 해야되지 않아요? 할머니! 지금 할머니께서 이 편지를 볼지 안볼지는 모르지만요. 이 편지 꼭 영원히 간직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성들여 썼으니까요!

할머니 경입이가 많이~ 사랑하는거 알고 계시죠? 그럼 즐일께요. 안녕히 계세요.

2011.5.29. 일요일 사랑하는 경입 올림



이 경 입  
동광중 1학년반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및 그 행사기한은

문) 저는 2002. 9. 5. 자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현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인 저도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답)경매절차는 그 시작에서 종결될 때까지 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경매에 따른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배당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처럼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가압류채권자, 경매절차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제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

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인 귀하도 이 사안에서 임차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